



선	기관의 장
람	

제1439호

2026년 9월 7일(월)

- 차 례 -

공 고

강화군 공고 제2026-1332호 보상계획 열람 공시송달 공고(불은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 1 개선공사)

공 고

인천시 강화군 공고 제2026-1332호

보상계획 열람 공시송달 공고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불은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계획 열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보상계획 열람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7.

강 화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불은면 두운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 나. 사업위치: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일원
- 다. 규 모: L=830m, B=2.0m, 사업면적 3,515㎡
- 라. 사업기간: 2026. 6. ~ 도로공사 완료시
- 마. 사업시행자: 강화군수

2. 공고기간: 2026. 9. 7. ~ 2026. 9. 21.(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목록

구분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m ²)	편입지번	편입면적(m ²)	지목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토지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539-1	10	539-1	7	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_*	구*영	
토지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737-4	197	737-4	6	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 ***번길 **_*	구*회	
		737-7	163	737-7	135	전			
토지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541-5	55	541-5	1	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	구*천	
		541-8	27	541-13	2	대			

5.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손실보상 협의⇒
계약체결⇒소유권 이전 등기⇒보상금(현금)지급(계좌이체)

다. 보상금 산정방법

- 보상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
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
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보상금은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라. 열람장소: 강화군청 도로교통과(강화읍 강화대로 394, 4층 도로교통과)

6. 처리계획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보상액의 산정) 및 제16조(협의)에 의거하여 보상협의를 예정이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재결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 재결결과에도 협의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규정에 따라 공탁 예정임.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도로교통과(☎032-93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